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정관

1962. 7. 6. 제정	1964. 1. 1. 개정	1974. 4. 1. 개정	1975. 10. 20. 개정
1982. 1. 1. 개정	1982. 4. 15. 개정	1990. 2. 1. 개정	1991. 12. 18. 개정
1994. 1. 1. 개정	1996. 12. 26. 개정	1997. 8. 18. 전문개정	1998. 12. 30. 개정
1999. 7. 30. 개정	2001. 9. 15. 개정	2003. 12. 2. 개정	2004. 11. 2. 개정
2005. 9. 22. 개정	2005. 12. 29. 개정	2007. 5. 9. 개정	2008. 1. 7. 개정
2008. 5. 2. 개정	2009. 7. 31. 개정	2010. 1. 13. 개정	2010. 4. 27. 개정
2010. 8. 11. 개정	2011. 3. 29. 개정	2012. 1. 12. 개정	2012. 8. 17. 개정
2013. 7. 23. 개정	2013. 12. 13. 개정	2015. 1. 9. 개정	2015. 8. 17. 개정
2016. 3. 30. 개정	2016. 7. 8. 개정	2017. 12. 7. 개정	2018. 4. 12. 개정
2019. 1. 18. 개정	2019. 8. 26. 개정	2020. 1. 10. 개정	2020. 12. 2. 개정
2021. 2. 26. 전부개정	2022. 1. 12. 개정	2022. 4. 6. 개정	2022. 9. 5. 개정
2022. 12. 6. 개정	2023. 1. 1. 개정	2025. 1. 1. 개정	2025. 6. 1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1948년 8월 9일에 전국의 공립학교 경영자들이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하여 교육시설 공제사업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 공제회를 계승하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을 통해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와 명칭) ① 이 법인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다.

② 이 법인의 명칭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y Safety (약칭 “KOIES”)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 안전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안전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시설 공제사업 및 배상책임 공제사업
2.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 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

4.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5. 교육시설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6.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
 7. 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9. 교육시설 실험·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10.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11.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12.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점검 관련 업무
 13.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연수 및 홍보
 14.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
 15.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16. 재난복구 및 재난예방 준비금 조성을 위한 사업
 17.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사업
 18. 조사·연구사업의 출판·보급 및 정기간행물 발간
 19.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교육
 20. 교육시설 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
 21. 중대 시설재난 시 긴급·임시 교육시설 지원비 지급
 22.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3.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
 24. 교육시설 사업을 위한 설계 전 사전기획.결과의 적정성 검토
 25. 그 밖에 안전원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사업
- ② 제1항제23호의 수익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안전원의 회원은 당연회원, 국립회원, 공립회원, 사립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자격) ① 당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전원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2. 교육부 정책기획관 <개정 2025. 1. 1.>
3. 시·도교육청 교육시설 공제업무 담당 국장

② 국립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의 장
2.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의 장
3.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장
4.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③ 공립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감
2. 교육지원청 교육장
3.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장

④ 사립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장
2.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학교법인 이사장
3.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

⑤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주체의 장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주체의 장
3.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안전원으로부터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고 안전원의 정관 및 내규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회원(당연회원은 제외한다)이 되려는 자는 안전원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 ② 회원은 가입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③ 제1항의 가입신청과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약관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등

제9조(임원) ① 안전원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장과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과 감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사회는 후보자에 대한 순위를 심의·의결하고 복수 추천한다.
- ③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건축, 회계, 법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교육부 정책기획관 <개정 2025. 1. 1.>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4. 별표의 순번에 따른 시·도교육청 교육시설 공제 또는 안전업무 담당 국장 4명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안전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② 안전원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③ 제1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외의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⑤ 이사장과 감사는 임기만료 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① 이사장 및 감사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원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교육부 정책기획관 <개정 2025. 1. 1.>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4. 제1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2명
5.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명된 비상임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안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최장기간 재직한 이사(재직기간이 같은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이하 “선임이사”라 한다)가 소집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전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원의 재산에 대한 감사
2. 안전원의 회계 및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와 총회 및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제2항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사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이사장 및 감사의 보수는 각 사업연도의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비상임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해임 등)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안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원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4.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②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통지한 즉시 해당 임원의 직무는 정지되며, 이와 관련된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이 부결된 즉시 해당 임원은 직무에 복귀한다.

제18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상임 임원과 안전원 직원은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겸직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등) ① 안전원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조직 등) ① 안전원에 본부와 각 권역별 지부를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직, 업무분장,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실비 변상 등) 삭제 <2025. 6. 19.>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교육부 정책기획관 <개정 2025. 1. 1.>
3. 교육감
4. 교육지원청 교육장
5.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임원 중에서 같은 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1명
6.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임원 중에서 같은 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1명

7.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임원 중에서 같은 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1명
 ②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안전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제안한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이사장은 매년 3월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④ 이사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총회 소집에 찬성한 이사 중 선임이사가 소집한다.

제25조(총회의 의결 등)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 ③ 회원이 총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표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안전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규칙, 지침 및 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장이 정한다.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제안할 사항
7. 공제회비 또는 공제료 등의 결정 및 공제급여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8. 안전원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 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 소집에 찬성한 이사 중 선임이사가 소집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안전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전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해당 안전의 심의를 위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출석하여 표결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명된 비상임이사와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표결할 수 없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이 곤란하거나 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의2(회의록)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출석이사, 심의안건,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안전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각종 준비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매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중 적립금

③ 안전원의 기본재산은 매 회계연도 결산서에 표기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려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원이 매수, 기부채납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안전원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 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준비금의 적립) 안전원은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복구준비금, 지진공제준비금 및 재난예방·운영준비금, 수탁사업 준비금을 적립·운영 할 수 있

다. <개정 2025. 6. 19.>

제33조(회계의 구분) 안전원의 회계는 공제사업회계, 수탁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34조(회계의 운영) ① 회계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②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 6. 19.>

제35조(회계연도) 안전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총 수입과 총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발생하는 공제급여 부족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 또는 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형태의 사무 또는 사업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보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7조(결산서의 제출)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항의 결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수입 및 지출) ①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공제회비 또는 공제료
2. 제4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금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수입금

② 안전원의 지출은 사업비, 일반관리비, 기타 지출로 한다.

제39조(이익금의 처리) ① 안전원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손실금의 보전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32조에 따른 준비금으로 적립

제7장 보칙

제40조(정관의 변경) 안전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정의 제정) 안전원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안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안전원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3조(준용) 안전원에 관하여「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이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997. 8.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공인회계사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2. 30.)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30.)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5.)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2.)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2.)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2.)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9.)

제1조(당연직임원의 명칭변경 등) 교육인적자원부 직제개편 등 본회 정관 및 제규정상
의 당연직임원의 직명과 부서명칭 변경시 별도의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
지 아니하고 변경된 직명과 부서명칭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9.)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7.)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5. 02.)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7.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임이사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제3항제3호 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명하
는 비상임이사는 이 정관 개정 당시 이사회가 추천한다.

제3조(상임감사 및 사무국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정관 개정 당시 재임 중인 상
임감사 및 사무국장은 이 정관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보며 상임감사의 임기는 2010
년 4월 30일까지로 하고, 사무국장의 임기는 201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교육시설방재연구원 폐지에 따른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개정 당시 교육
시설방재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관 시행일에 본회 해당 직급의 직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1.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총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 재임 중인 사무국장은 이 개정 정관에 의해 사무총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201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0. 4. 27.)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11.)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5조 중 사무총장에 관한 규정은 이 정관 개정 당시 재임 중인 사무총장 임기(2012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1. 3. 29.)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12.)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17.)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3.)

제1조(주무관청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주무관청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본회 정관 및 제규정상의 주무관청 명칭은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된 명칭으로 자구를 수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3.)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9.)

제1조(명칭변경) 교육부 직제개편에 따라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 제18조제2호, 제23조제3항제1호, 제25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안전정보국장”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위규정의 개정) ① 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제사업회계(영리) 및 일반회계’를 ‘공제사업회계(영리), 일반회계, 위탁사업회계 및 국가보조금회계’로 한다.

② 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와 제4조제2항 중 ‘세입’을 각각 ‘수입’으로 한다.

부칙 (2016. 3.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위규정의 개정) 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가보조금회계”를 “국고보조금회계”로 한다.

부칙 (2016. 7.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회의 회계 구분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2. 7.)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2.)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8.)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위규정의 개정) ①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의 제목,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 제목,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 중 “지부”를 “지역본부”로 한다.

②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부”를 “지역본부”로 한다.

③ 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지부”를 “지역본부”로 한다.

④ 문서보존및보존기간책정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중 “지부”를 “지역본부”로 한다.

부칙 (2020. 1. 10.)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

(시행일) 이 정관은 2020. 12. 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비상임 이사는 이 정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등 변경의 특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또는 같은 영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안전원의 지도·감독 관할 부서 변경 등으로 직제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명칭에 한하여 제23조, 제27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정관 및 제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1. 12.)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6.)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5.)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6.)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

제1조(명칭변경) 교육부 직제개편에 따라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0조제3항제1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제2호 중 “교육 안전정보국장”을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 1.)

제1조(명칭변경) 교육부 직제개편에 따라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0조제3항제1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제2호 중 “교육 자치협력안전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6. 19.)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권역별 이사 순번】

구분	권역별 순번	비고
수도·강원권 (1명)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③ 경기도교육청 ④ 강원도교육청	
충청권 (1명)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③ 충청북도교육청 ④ 충청남도교육청	
영남권 (1명)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② 대구광역시교육청 ③ 울산광역시교육청 ④ 경상북도교육청 ⑤ 경상남도교육청	
호남·제주권 (1명)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② 전라북도교육청 ③ 전라남도교육청 ④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